│ 검사법령 제 · 개정

선박소방설비기준 주요 개정내용

◇ 시행일

- 2006년 7월 30일부터 시행
-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비치 관련 개정 규정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

◇ 개정사유

소형선박의 기관실은 장소가 협소하여 운항 중에 선원이 상주할 수 없어 화재사고에 취약하고, 화재발생시에는 전소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러한 무인기관실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함

◇ 주요내용

-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의 요건 마련
- ※ 무인기관실: 원격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주기관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기관운전 중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기관실
- 어선의 기관실에 대한 소방설비 요건 보완
 - 무인기관실에는 아래의 1)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비치
 - 1)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
 - 2)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소화장치
- 무인기관실 이외의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는 기관출력 750kW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휴대식 소화기 비치
- 상기의 소방설비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휴대식소화기 추가 비치
- · 총톤수 500 ~ 1,000톤 미만 : 3개
- · 총톤수 80 ~ 500톤 미만: 2개
- · 총톤수 80톤 미만: 1개
- 제2종선 및 제4종선은 아래의 1)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비치
 - 1)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
 - 2)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소화장치